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재생에너지 공급 가능 지역의 국가산업단지 지정근거
추가 등 》

■ 박지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031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박지원의원 대표발의(제2220031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재생에너지 공급 가능 지역의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계획 반영(안 제2조제8호가목 및 제6조제5항제6호)	2

I. 박지원의원 대표발의(제2220031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지원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7. 20.

다. 회 부 일 : 2026. 7. 2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산업단지를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요구가 강화되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이용이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참여와 산업경쟁력의 핵심 요건으로 부상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입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산업단지의 정의에 입주기업에 공급되는 전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개발계획에는 재생에너지의 수급 및 이용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가목 및 제6조제5항제6호 후단).

3. 검토의견

가. 재생에너지 공급 가능 지역의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계획 반영(안 제2조제8호가목 및 제6조제5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의3. (생략)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u>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u> <u><신설></u>	제2조(정의) ----- -----. 1. ~ 7의3. (현행과 같음) 8. ----- ----- ----- ----- ----- ----- ----- ----- -----. 가. ----- <u>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산업단지</u> 1) <u>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u>

현행	개정안
<신설> 나. ~ 라. (생략) 8의2. ~ 12. (생략)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 ~ ④ (생략) ⑤ 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 5. (생략)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입주기업에 공급되는 전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 라. (현행과 같음) 8의2. ~ 12. (현행과 같음)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

현행	개정안
획 <후단 신설> 7. ~ 9. (생략) ⑥ ~ ⑧ (생략)	- 이 경우 제2조제8호가목2)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의 수급 및 이용계획,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송·배전시설 설치 계획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 9.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중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 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¹⁾,

개정안은 입주기업에 공급되는 전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에너지²⁾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 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는 재생에너지를 태양에너지·풍력·수력·해양에너지·지열에너지·바이오에너지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같은 법은

단지를 국가산업단지의 범위에 추가하고,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재생에너지의 수급 및 이용계획,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송·배전시설 설치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가목2) 및 제6조제5항제6호 후단).

최근 기업의 재생에너지 이용이 글로벌 공급망 참여 및 산업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고려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정부도 RE100³⁾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 등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⁴⁾.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 생산·공급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산업입지 선정 단계부터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에 재생에너지 수급·이용 및 송·배전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법률 제21462호에 따라 2026년 9월 18일부터 제명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될 예정임.

3)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 기업 이니셔티브를 말함.

4) 산업통상부는 2024년 산업단지 태양광을 2030년까지 6GW 보급하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2025년에는 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RE100 산업단지 추진 TF」를 구성하여 기업지원, 산업단지 기반시설 및 재생에너지 기반시설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하였음. 또한 2026년도에는 RE100 산업단지의 분산형 전력망 구축 및 기업 투자유치 등에 필요한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음.(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를 태양광 발전의 핵심 기지로－산단태양광 활성화 방안」, 2024. 7. 3.; 산업통상자원부, 「관계부처 합동 RE100 산업단지 추진 TF 발족」 및 「RE100 산단 조성에 범부처 역량 총결집」, 2025. 7.; 산업통상자원부, 「2026년 산업부 예산 13조 8,778억원 편성」, 2025. 9. 1.)

다만,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재생에너지 공급 가능성을 국가산업단지의 별도 유형으로 규정하는 것이 국가산업단지 제도의 성격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낙후지역의 개발 촉진 또는 광역적 개발 등 국가적 차원의 산업입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과 이와 관련된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는바⁵⁾, 재생에너지 공급 가능성은 산업단지의 유형을 구분하는 요소라기보다 산업단지의 입지·조성 과정에서 고려되는 기반여건에 가까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재생에너지 공급 가능성이라는 입지여건만을 근거로 국가산업단지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둘째, 개정안은 입주기업에 공급되는 전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 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국가산업단지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이 미미한 경우나 구체적인 공급계획 없이 장래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 개정안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의 적용범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공급능력, 구체적인 공급계획 등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⁶⁾.

국토교통부는 국가산업단지 개발 시 재생에너지 활용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재생에너지 생산·공급지역과 국가산업단지 등을 연계하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고⁷⁾ 해당 법안에서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 별도 규정을 둘 경우 제도 간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3항은 준산업단지의 지정기준 및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은 대상지역의 용도지역, 면적 및 기존 공장부지 비율 등 구체적인 지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7)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20036호)은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인근에 산업단지·정주시설·송·배전시설 등을 연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고, 기업의 RE100 전환 수요에 대응하는 산업입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개발과 전력공급 및 계통연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579